

EAT-IT 보안정책서

EAT-IT 보안정책서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정책은 EAT-IT에서 운영하는 밥세권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 기준을 정의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근거 법령)

본 정책은 다음의 법 및 기준을 준수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4.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7.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8. 전자서명법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0. ISMS-P 인증 기준
11. NIST, OWASP, CIS Benchmark 등 국제 표준

제 3 조(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소유·관리·운영하는 모든 정보 자산과 이를 취급하는 임직원, 계약직, 협력업체 및 외부 개발·운영 인력에 적용한다.

1. EAT-IT 임직원 및 협력업체, 외부 개발·운영 인력
2. 밥세권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3. 웹 서비스 및 내부 업무 시스템
4. 서비스 개발·운영·유지보수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 자산

제 4 조(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부 정의는 정책 부속문서에서 규정한다.

1. 정보 자산: 회사가 보유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문서,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의미한다.
2. 정보시스템: 서버, DBMS, 웹·API,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3.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분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4. 모의 침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공격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검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5. 개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6. 위험 수용: 식별된 위험요소 중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때, 문서화된 사유를 기반으로 일정 조건하에 조치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장 보안 대상 및 조직

제 5 조(정보보호 조직)

정보보호 조직은 회사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각 역할별 책임과 교육 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정보보호 전략 수립, 보안 예산 승인 요청, 보안정책 운영의 총괄 책임을 가진다.
 1.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1.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다.
3. 보안관리자는 CISO·CPO의 지시에 따라 보안정책 운영, 시스템·네트워크·DB 보안 조치 이행, 보안점검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을 담당한다.
 1.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
4. 정보보안담당자는 취약점 분석·평가, 사고 대응, 접근통제 점검, 로그 분석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며, 보안장비 및 시스템 보안 구성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1. 연 1회 이상 실무 보안 교육 및 보안 위협 대응 교육을 이수한다.
5. 협력업체 및 외부 운영 인력은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절차·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정보보호책임자(CISO) 또는 보안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보안 교육 또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정보보호 통제 정책

제 6 조(계정 및 접근통제)

계정 및 접근통제 정책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모든 시스템 접근은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한다.
2. 외부 접속은 VPN 및 암호화된 통신(TLS)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3. Root/Administrator 직접 로그온을 금지한다.
4. 90 일 이상 미사용 계정은 자동 잠금 한다.

제 7 조(네트워크 보호)

네트워크 보호 통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 운영한다.

1. 네트워크는 업무 특성 및 보안 등급에 따라 존(Zone)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DMZ/서버 존/업무 존 등).
2. 방화벽 정책은 기본 차단(Default Deny) 방식으로 운영한다(Allow by Exception).
3. 포트·프로토콜·IP 허용 요청은 사유 및 위험 분석을 포함하며, 정보보호책임자(CISO) 승인 후 적용한다.
4. 외부 위험국가 IP 또는 공격 출처 IP는 차단한다.

제 7-1 조(보안장비)

보안장비(WAF, UTM)의 효과적인 운영 및 서비스 보호를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UTM 과 WAF 는 밥세권서비스의 네트워크·웹·결제·관리자 페이지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보안장비로 운영한다.
2. 모든 보안장비 정책은 최소 권한 원칙(Allow by Exception)에 따라 구성하며, 정책 변경 시 사유·위험 분석·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정보보호책임자(CISO) 승인 후 반영한다.
3. UTM 은 DMZ, 내부망, 서버존 간 트래픽을 통제하며 IPS 기능을 활성화하여 Injection, RCE, Brute Force, Port Scan 등 주요 공격 패턴을 탐지·차단한다.
4. 악성 URL·피싱 사이트 차단(URL Filtering)을 활성화하여 관리자·사용자 환경 전체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5. WAF 는 웹·API·결제·관리자 페이지의 공격 방어를 위해 운영하며, SQL Injection, XSS, File Upload 우회, Command Injection 등 주요 웹 공격에 대한 차단 Rule 을 적용한다.
6. IPS/WAF 시그니처 및 보안정책은 최소 월 1 회 이상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서비스 변경 시 즉시 정책을 재검토한다.
7. 보안장비 장애 발생 또는 탐지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정보보호책임자(CISO)에 보고하고, 분석·조치 내용을 기록한다.

제 8 조(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서버 및 OS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를 준수한다.
2. 설치된 서비스 중 불필요한 기능·포트는 즉시 제거한다.
3. 패치 및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심각(Critical) 위험 패치는 즉시 반영한다.
4. Root 권한은 최소 인원만 관리하고 사용 이력을 기록한다.

제 9 조(계정 및 접근통제)

암호화 및 키 관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저장 데이터는 AES-256 이상의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2. 전송 구간은 TLS 1.2 이상을 필수 적용한다.
3. 암호 키 접근 권한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4. 주요 암호 키는 연 1회 이상 교체한다.

제 10 조(로그 및 모니터링)

로그 및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모든 대상 시스템의 로그를 중앙 서버로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누락을 방지한다.
2.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접근을 통제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최소 1년)을 충족하며 스토리지 비용을 효율화 한다.
또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확장한다.
4. 심각한 보안 및 운영 이벤트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 보고한다.

제 11 조(계정 및 접근통제)

결제 기능 운영 시 결제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결제 처리 과정에서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 등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을 금지한다.
2. 결제 데이터 전송 구간은 TLS 1.2 이상을 필수 적용한다.
3. 결제 API Key-Secret Key는 안전한 Key Vault 또는 보안장비(HSM)에 저장하며, 접근 권한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4. Webhook·Callback URL은 무결성 검증(Signature 또는 Token)을 통해 요청을 검증한다.
5. PG 연동 IP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제한하고, 비인가 IP 접근은 차단한다.
6. 결제 요청 및 결과값에 대해 파라미터 변조 차단을 위한 서명값 또는 해시값 검증을 적용한다.

7. 결제 관련 로그(거래내역, Transaction ID, 요청/응답 로그)는 위·변조 방지 후 5년 이상 보관한다.
8. 결제 영역은 OWASP TOP 10 및 금융보안원 가이드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시행한다.
9. 결제 오류(중복결제, 미완료 결제 등)는 재현 가능한 로그 및 원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즉시 대응한다.

제 4 장 관리적 보안

제 12 조(취약점 분석 및 모의 침투)

취약점 관리와 모의 침투 수행을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취약점 분석·평가는 연 1회 이상 수행한다.
2. 중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모의 침투(모의해킹)를 수행한다.
3. 식별된 취약점은 High → Medium → Low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선 조치한다.
4. 취약점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 13 조(사고 대응)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1. 사고 대응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탐지 → 격리 → 분석 → 복구 → 재발방지
2.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호책임자(CISO) 및 보안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3. 사고 대응 결과 및 근본 원인 분석을 문서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4.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자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경위 등 상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백업 및 복구)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데이터는 최소 일 1회 이상 충분 백업 한다.
2. 매달 1일은 전체 백업을 실시한다.
3. 백업본 무결성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4. 복구 테스트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데이터 가용성과 재해복구 보장을 위해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지사 간 교차 백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6. 재해복구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RTO는 4시간 이내, RPO는 24시간 이내로 설정한다.

2. 재해 발생 시 상황보고 → DR 전환 결정 → 백업본 복구 → 서비스 점검 → 정상화 순으로 복구 절차를 수행한다.
3. DR 환경 구성(백업 스토리지·DR 서버·네트워크 이중화 등)을 유지하고, 관련 계획은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간신히 한다.

제 15 조(보안 교육)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전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한다.
2. 피싱·랜섬웨어 대응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3. 신규 입사자는 입사 즉시 보안교육을 이수한다.

제 5 장 물리적 보안

제 16 조(출입 통제)

물리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출입 통제 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다. 중요 구역은 보안등급에 따라 일반구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서버실(Server Room) – WEB, DB, MAIL, LOG, BACKUP 서버 등 주요 서비스 장비 위치
 2. 네트워크 장비실(Network Equipment Room) –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UTM·WAF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위치
 3. 전산실(IT Operations Room) – 관리용 PC, 관리 콘솔, 모니터링 장비 위치
 4. DR 및 백업구역(Backup/DR Zone) – 백업 스토리지 및 재해복구 장비 위치
 5. 기타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지정한 중요 정보처리 공간
2. 서버실·전산실·네트워크 장비실 등 중요 구역은 지정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3. 출입 기록(출입자 정보·출입 일시·출입 목적·카드키/출입증 로그)은 6개월 이상 보관한다.
4. 출입 권한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직무 변경·전출·퇴사 시 즉시 권한을 회수한다.
5. 장비 반출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서버·네트워크·백업·보안장비 등 중요 장비 반출 시 사전 승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반출입 내역은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안관리자가 검토한다.
 3. 외부 수리 목적 반출은 정보보호책임자(CISO) 승인 후 가능하며, 반입 후 무결성 확인을 수행한다.
6. 방문자 관리 절차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방문객은 출입대장 등록 및 신분증 확인 후 방문자증을 발급받는다.

2. 방문자는 지정된 담당자의 동행(Escort) 하에 작업하며, 단독 출입을 금지한다.
3. 방문자 기록 및 작업 내역은 6 개월 이상 보관한다.
7. 내부 인력 및 외부 인력 출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인력: 직무상 필요 인원에게만 출입 권한을 부여하며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한다.
 2. 외부 인력(협력업체·점검 인력):
 1. 사전 승인 절차 후 출입 가능
 2. 작업 목적·작업시간·사용 장비를 사전 제출해야 함
 3. 출입 중에는 보안관리자 또는 담당자의 감독하에 작업한다.

제 6 장 문서 관리

제 17 조(문서 관리)

보안 문서의 무결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모든 보안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변경 시 버전 관리를 시행한다.
2. 보안 관련 문서는 접근권한을 가진 인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 18 조(기록 보존)

보안 로그, 사고 기록,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내역은 1년 이상 보관한다.

제 7 장 보호대책 수립

제 19 조(단기 보호대책)

다음 항목은 사업기간 내 즉시 개선 대상이다.

1. High Risk 취약점 즉시 조치
2. 암호화 미 적용 구간 해소
3. 계정·권한 구조 재정비
4. 네트워크 구조 재정립
5. 취약한 웹 요소(OWASP TOP 10에 기반한 취약점) 즉각 차단

제 20 조(중기 보호대책)

회사는 다음 중기 목표 기반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1. ISMS 기반 보안정책 전면 개정 및 운영체계 고도화
2. EDR, WAF, SIEM 등 보안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3. DR·백업 체계 및 고 가용성 인프라 강화
4. DevSecOps 기반 개발·보안·운영 프로세스 통합

제 8 장 부칙

제 21 조(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2 조(개정)

본 정책은 정보보호책임자의 검토 후 대표자의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